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9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김문수 · 정준호
윤종균 · 한정애 · 조인철
최혁진 · 이연희 · 손명수
김주영 · 김기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공급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되,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읍·면 지역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,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읍·면 지역 내 주거혜택 부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주택규모 상향 대상이 해당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 읍·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비수도권 읍·면 지역 전체에 대해서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읍·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

하고 지역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6호).

법률 제 호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전단 중 “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”을 “읍 또는 면 지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“국민주택규모”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(이하 “주거전용면적”이라 한다)이 1호(戶)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<u>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</u> 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	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읍 또는 면 지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7. ~ 29. (생략)	7. ~ 29. (현행과 같음)